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2021.11.19 규칙 제881호 다른 규칙의 개정(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97-2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양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 납입고지서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그날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 사용 신청 시 사용료는 다음 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홍보물의 부착)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에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광양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제정 2016. 5. 11.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 칙 <규칙 제866호, 개정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광양시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각각 “광양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 칙<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⑥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